



이민/비자
이동찬 변호사

Q 새로운 유학생 규정

▶문= 저는 내년에 미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, 미국에서 대학원 까지 진학할 계획입니다. 그 후 OPT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, 최근 유학생 관련 규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.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?

▶답= 2025년 8월 27일, 국토 안보부(DHS)는 유학생(F-1), 교환 방문자(J-1), 외국 언론인(I-1) 비이민자를 대상으로 Duration of Status(D/S) 신분을 종료하는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.

현재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D/S 신분으로 입국하여, 신분 요건만

충족하면 체류 만료일이 따로 없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새 규칙안이 시행되면,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더 이상 D/S로 입국할 수 없으며,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, 둘 중 더 짧은 기간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.

이미 D/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경우, 새 규칙 시행일부터 I-20 또는 DS-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인정되지만, 체류 신분이 새 규칙안의 시행 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. 여학연수생은 최대 2년까지만

체류가 가능합니다.

또한, 유학생은 체류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새 규칙은 전공 변경에도 제한을 두며, 특히 대학원생은 전공 변경이 금지됩니다.

귀하의 경우 내년에 학부를 졸업하면 체류 만료일은 I-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(즉, 졸업 시점)과 일치해서 내년이라고 생각됩니다.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.

기존 규정에서는 학교 DSO가 프로그램 변경이나 연장을 자유롭게

처리할 수 있었지만, 새 규칙이 시행되면 이민국을 통한 별도의 신분 연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석사과정 이 끝나고 OPT를 신청할 때에도 석사 프로그램 종료일에 필요한 OPT 기간이 없다면 먼저 유학생 신분을 연장한 후 OPT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, 새 규칙은 유학생의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. 현행 규정에 따르면, 유학생은 이 유예기간 내에 신분 변경 또는 신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.

▶문의: (213)291-9980

이보다 더 싼 가격은 없다! 대한민국 명품 블라인더 드디어 미국 상륙!

홈디포보다 50% 싼 가격에 드립니다!

직판 체계를 구축해 중간 유통 마진없이!
10,000 스퀘어피트 자체공장과 소름 보유!

- ✓ 다양한 색상과 패턴
- ✓ 공기정화 향균기능
- ✓ 뛰어난 디자인

나무셔터, 우드 블라인드, 셰이드 블라인드, 커튼, 리모콘 자동 블라인드 등

미국 직판 개시
공장도가
세일

임페리얼
블라인더
품위를 높여주는 인테리아의 마침표

상담무료&견적무료

LA 213.500.3222 SF 408.828.2224 Denver 303.960.9292 Seattle 206.677.1514
OC 714.365.9424 NY 201.574.6292 Las Vegas 213.220.7727

연락주시면 언제라도 샘플 들고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. Imperialblinds.online 1238 S Magnolia Ave, Anaheim, CA, 92804